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40225 **안지고학급참**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2024.02.08 aengvip@naver.com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2024.09.27.

안자고한우곱창

정보공개서

[주식회사 선앵에프앤씨]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주식회사 선앵에프앤씨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잡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 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 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 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 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 광주 북구 서림로 100번길 12, 2층(임동)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1660-4241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1660-4241

목 차

I. 3	가맹본부의 역	일반 현황
п. З	가맹본부의 7	가맹사업 현황
ш.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지	바의 부담····································
V. '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및 제한 교육 프로그 중은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VI.	가맹사업의 역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УШ. .	교육・훈련어	∥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경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 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 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 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안자고한우곱창 법인 설립등기일 2024. 5. 2.		광주 북	광주 북구 서림로 100번길, 12, 2층(임동)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선앵에프앤씨			2024. 5. 23.	권선앵	166	0-4241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2001		사업자등록	법자등록번호 884-		-81-03307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내이사	권선앵 (주)선앵에프앤씨	안자고한우곱창	- 광주 북구 E M 대표자 N A (권선 ()	서림로 100번길, E대표전화번호 1660-4241	12, 2층(임동) 대표팩스번호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선앵FNC	안자고 한우곱창	2024. 5. 29.	광주 서구 회재로 1050, 1516호(캐슬온리뷰)	권선앵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	_	_	_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	-	-	_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_	_	-	_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안자고한우곱창]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안자고한우곱창	소곱창을 주메뉴로 판매하는 업종			
상 호	안자고한우곱창 00점	해당 지역을 가맹점 상호로 사용합니다			
상표(서비스표)	안자고학급창 플로리	상표등록출원 중 (접수일자 2023. 12. 05.) 출원번호 제40-2023-0221638호			
광 고	알다고 [#] 곱참	_			
그 밖의 영업표지		-			

- □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출원중)
-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3년	-	_	_	_	_	_
2022년	-	_	_	_	_	_
2021년	-	_	_	_	_	-

※ 당사는 2024. 5. 29. 가맹사업 양도양수 계약하여 영업을 개시하여 해당 없습니다. 다만, 당사 대표 권선앵이 2021. 8. 19. 현재까지 진우한우곱창 풍암점이라는 상호로 사업경력이 있어 별첨 1. 2021 ~ 2022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첨부합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1)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전한에다	15	হ পা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권선앵	사내이사	2024. 5. 2.~현재	㈜선앵에프앤씨/사내이사	업무 총괄			
가맹사업 기맹사업			2023. 12.~현재	선앵FNC/대표	업무 총괄			
관련 임원			2021. 08.~현재	진우한우곱창 풍암점/대표	업무 총괄			
	정안자	감사	2024. 5. 2.~현재	㈜선앵에프앤씨/감사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시점	상근	비상근	석천구(형)
2023. 12. 31.	-	2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공정거래 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없습니다. **안자고한우곱창** 2023. 12. 5. 상표등록출원 중입니다(위 4항 참조).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사 용기간)	
안자고 <mark>학급</mark> 참 플로지	곱창전문 업 등 제43류	상표등록출원 중 출원일자 2023. 12. 05.	출원번호 제40-2023-02 21638	권선앵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u>현재 출원 중</u>으로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田.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의 시작일

[안자고한우곱창]을 시작한 날 : 예정(가맹계약 체결 사실 없음)

2. [안자고한우곱창]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선앵 에프앤씨	안자고 한우곱창	권선앵	2024. 5. 2.~현재	광주 북구 서림로 100번길 12, 2층(임동)

3. [안자고한우곱창] 업종

영업표지	업종
안자고한우곱창	한국대분류거래조정원 소분류(주요상품)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소급창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안자고한우곱창]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714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_	_	-	_	_	_	0	0	0
서울	-	_	-	_	_	_	-	_	_
부산	-	_	_	_	_	_	_	_	_
대구	_	_	_	_	_	_	_	_	_
인천	-	_	_	_	_	_	_	_	_
광주	-	_	-	-	_	_	-	_	_
대전	-	_	_	-	_	_	-	_	_
울산	-	_	_	-	_	_	-	_	_
세종	-	_	_	_	_	_	-	_	_
경기	-	_	_	_	_	_	-	_	_
강원	_	_	_	_	_	_	_	_	_
충북	_	_	_	_	_	_	_	_	_
충남	_	_	_	_	_	_	_	_	_

전북	_	_	_	_	_	_	_	_	_
전남	_	_	_	_	_	_	-	_	_
경북	_	_	_	_	_	_	_	_	_
경남	_	_	_	_	_	_	_	_	_
제주	_	_	_	_	_	_	-	_	_

5. 바로 전 3년간 [안자고한우곱창]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_	_	_	-	-	-
2022	_	_	_	-	-	-
2023	0	0	0	0	0	0

6. [안자고한우곱창]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해당 없음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업종		가민	생점/직영점의	수
一十五	'8조/기급	の日本へ	등록번호	월 6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ı	Q! KOREA	TOOO	EDIATION A	574 GENCY	_	_
특수관계인 (배우자)	-	-	-	_	_	_	_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	-	-	_	_	_	_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_	_	_	_	_	_	_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가맹점 없음.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지역	2023년말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¹ 매출액(연간 ¹ 매출액(14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0	0	0	_	_	-	_	-
서울	_	_	_	_	_	-	_	-
부산	_	_	_	_	_	_	_	_

대구	_	_	_	_	_	-	_	-
인천	_	_	_	_	_	-	_	_
광주	_	-	_	_	_	-	_	_
대전	_	_	_	_	_	_	_	_
울산	_	-	_	_	_	_	_	_
세종	_	-	_	_	_	-	_	_
경기	_	_	_	_	_	_	_	_
강원	_	_	_	_	_	_	_	_
충북	_	_	_	_	_	_	_	_
충남	_	-	_	_	_	-	_	_
전북	_	_	_	_	_	_	_	_
전남	_	_	_	_	_	_	_	_
경북	-	-	_	_	-	_	_	_
경남	_	-	_	_	_	_	_	_
제주	_	_	_	_	-	-	_	_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가맹본부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8. [안자고한우곱창]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안자고한우곱창]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0	0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안자고한우곱창]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해당 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해당 없음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31~32]쪽을 참고하십시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1 4	1 4	/ PE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7132
합계	(비공개)	-	_	_	_	_
	_	_	_	_	_	_
광고	_	_	_	_	_	-
9 T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판촉	_	_	_	_	_	_
	_	_	_	_	_	_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농협은행]에 예 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NH농협은행	농협중앙회 풍암동지점	광주 서구 풍암1로 21번길7	062-682-8152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RADE MEDIATION AGENCY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농협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농협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공정위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농협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농협은행과 가맹금 예치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안자고한우곱창]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의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6,500				
가맹비	11,000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사후 가입비로 전환)
교육비	5,500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기타	-	_	_	_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5,000	_	_	_
(현금)보증금	5,000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직전년도 전체 가 맹점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 등의 대 금(원·부재료 대금 포 함)의 3배 이내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 계	21,500
가입비	11,000
교육비	5,500
(현금)보증금	5,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20]쪽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교
총계		69,500				
필수설비(정착물)	자율선택	15,000	_	가맹계약시	설치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 및 간판	자율선택	54,000	1,800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3일 이내	공사 전 계약취소	99㎡ 기준(30평기준)
최초 공급 상품 비용	가맹본부	5,000	_	가맹계약시	상품 미공급시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자율선택	9,000	300	가맹계약시	개점전 계약취소 (그간 소요 비용 제외)	

- ①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② 개점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치/구매/유지하여야 합니다.
- ③ 위 표 항목(정보공개서 v-1 내역 중 거래상대방 강제 항목을 제외한 물품은 귀하가 직접 설치/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구매/설치할 경우 3.3.㎡ /33만원(부가세 포함)의 기획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④ 품목 일부를 직접 구입/설치할 경우 계약체결 이전 당사와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희망자 점포 선정(점포 기준면적 99㎡)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당사는 브랜드와의적합 여부를 판단)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 최종 선정
	※ 점포계약 최종 의사결정권은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당사와 경영방침에 부합하여야 할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보건증 소지자(필수)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안자고한우곱창]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매장 크기에 따라 설비, 집기 비품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총액	계약금	중도금(1)	중도금(2)		잔금
금액(천원)	21,500	21,500	_	_	_	_
납부일	_	계약체결일 예치	_	_	_	_
비고	단,	협의에 따라 분할	지급 및 지급	방법을 변경	경할 수 있습	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32~33]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로열티	가맹본부	매출액 2%	다음 월 5일		_	_
리스료	_	해당 없음 KOREA FAIR TRADI	MEDIATION	61 AGENCY	_	_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가맹본부 50% 가맹점사업자 50%	정산후 10일	실시 전	실시 후	_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가맹본부 50% 가맹점사업자 50%	정산후 10일	실시 전	실시 후	_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실비	교육 실시 10일 이전	교육 취소	교육실시 이후	교육 필요시 지급
간판류 임차료	_	해당 없음	_	_	_	_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⑤	_	실비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실시 전	실시 후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가맹점	협의	_	_	_	_
시설, 각종 기기의	_	실비	교체・보수	-	_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교체・보수비용			후 5일 이내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개선 비용	_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 체결일	_	_	36~37 페이지 참조
재고관리 비용	_	해당 없음	_	-	-	_
회계처리 비용	_	해당없음	_	_	-	_
POS 사용료	_	1,100	계약체결일	_	_	_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당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실재제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분기별 1회	문의: 가맹본부 (1660-4241)
매출/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1년 2회	문의: 가맹본부 (1660-4241)
점포상태점검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한 점포상태 점검	부정기	문의: 가맹본부 (1660-4241)

당사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한 점포상태를 점검 시 정기적 또는 부정 기적으로 점포를 방문하고 당사의 가맹점 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재고관리, 매출/회계처리 관련 등)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자료요청은 (서면, 이메일, FAX, POS, 발주 프로그램,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재가맹비는 없습니다. 다만 추가 교육이 필요할 경우 협의하여 추가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 계	_	_	_	_	_
추가 교육비	협의하여 결정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미실시	가맹점사업자 교육 불참	추가 교육 필요시
갱신가맹비	해당 없음	1		_	-
이행보증금	해당 없음	F 9"	700-3	-	-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은 승계됩니다.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안자고한우곱창"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의 승인을 받은 양수인이 귀하의 잔여 계약(갱신요구) 기간을 인정받은 경우 양수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에 가맹비(550만원, 부가세포함), 교육비(550만원, 부가세포함), 보증금 500만원을 납입하고 당사가실시하는 개점전 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 다만, 양수인의 귀하의 잔여 갱신요구기간이 아닌 갱신요구기간 10년을 새롭게 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비(1,100만원, 부가세포함), 교육비(550만원, 부가세포함), 보증금 500만원)을 납입하며신규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운영권 양도에관한 자세한절차는 [32]쪽에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 $(10\%\sim90\%)$ 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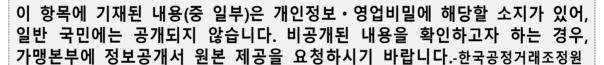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사업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메뉴의 표준화를 통해 고객에게 통일된 이미지를 심어주어 고객이 언제 어느 매장을 가도 같은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고객의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시켜전체 가맹점사업자의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1) 귀하가 [안자고한우곱창]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메뉴 제조에 따른 장비 및 집기 추가 가 필요한 경우 해당 구입비용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메뉴를 변경 및 추가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의 초기 가맹본부 주된 수익구조는 개설수익(가맹비, 교육비)과 로열티 중심으로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전년도 기준하여 직접적인 차액가맹금 수취정보가 없고 가맹사업확장까지는 관련 내용 발생이 고려되지 않으므로 관련 내용 기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안자고한우곱창]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안자고한우곱창]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 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안자고한우곱창]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 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①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곱창구이		1회 위반: 구두 경고	
곱창전골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2회 위반: 2회 이상	
곱도리탕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서면 시정요구	
닭발/닭특수부위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 ②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 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③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필요시 기존 메뉴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메뉴 제조에 따른 장비 및 집기 추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구입비용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메뉴를 변경 및 추가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고등학교 재학생	주류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미성년자	주류	기세된 세품는 판매할 수 없음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 ①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②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 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곱창구이	18,000(1인분)	변경시 통보	
곱창전골	38,000(2인분)	변경시 통보	2023. 12월 기준
곱도리탕	49,000(2인분)	변경시 통보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 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

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이치 어조 비이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동일한 업종 범위 	가맹본부	계열회사	
소곱창구이, 곱창전골, 곱도리탕을	㈜선앵에프앤씨	케다 어ㅇ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안자고한우곱창)	해당 없음	

* 당사의 사내이사 권선앵은 2021. 8. 19. 현재까지 진우한우곱창 풍암점이라는 상호로 동일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u>진우한우곱창 풍암점의 영업</u>지역 내에는 가맹점을 출점하지 않습니다.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5km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의 경우 기준보다 더 넓거나 좁게 설정하여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 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사이 통보) → 가맹점사업자에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 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 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안자고한우곱창'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안자고한우곱창]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안자고한우곱창]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소비자의 기호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 필요에 따라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안자고한우곱창]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D-60일 이전

à]→E, 아니오→A	
Α.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В.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	
	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_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_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안자고 한우곱창]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30	6조 1항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3회 이상 원·부재료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 의무를 지체 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정기 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기 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 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제37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가맹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 하는 경우	(제29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제5항에 의한 노후 점포 설비의 교체·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 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약정한 원·부재료 등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등 이 계약상 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제37조 3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Ó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Ó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Ó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	8조 4항
ブ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가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가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 10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 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 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 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ㅇ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확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와 관련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두인이 당사가 정안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	[문의: 가맹본부 (1660-4241)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 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 비용, 개점 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 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 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 서면 통지시	모든 권리 의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통지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대리권 수여 사실 서면통지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 의무	업무위탁 사실 서면통지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 기간 동안 [가맹점운영 지역 내에서] 귀하가 [안자고한우곱창]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 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일반인에게 식사 및 주류를 제공하면서 곱창을 주메뉴로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가맹본부 (1660-4241)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안자고한우곱창]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일 7시간 (17:00~24:00)	명절을 제외한 연중무휴	문의: 가맹본부 (1660-424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 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99㎡ 기준)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3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청결(4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4회/1주일	가맹사업팀	
친절도(5항목)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1회/2주일	가맹사업팀	
품질관리(7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레시피, 자점매입 여부)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4회/1주일	가맹사업팀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본사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안자고한우곱창]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 TOTAL THE TO					
구분	광고	부당	計비율	분담 절차	비고	
1 12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 · · · · · · · · · · · · · · · · · ·	1177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대중매체 광고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할인행사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판촉행사 ¯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하가 50%	증정상품 출하가 50%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팜플렛 등 제작	판촉물 제작비용 50%	판촉물 제작비용 50%		दिया १०	

	기타 개별행사		난독 행사는 님 100%	판촉계획안 발송 → 브랜드 통일성 검토 → 본사 10일 이내 승인 여부 통지	가맹본부 승인
할인카드· 멤버십 제휴서비스	제휴행사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가맹점) 월 할인금액 제시 → (가맹본부) 자료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부담액 송금	할인서비스 등의 종료시까지
기타					

전국 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 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 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사전 통지 후 승인(통지받은 다음 날부터 10이내 통지)을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 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 게 본 계약상 구제 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38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및 제40조 제1항, 제2항 (비밀유지의무), 제3항(경업금지 의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1) 제40조 제1항, 제2항(비밀유지의무), 제3항(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 본부에게 위약벌로 1,000만 원(부가세 없음)을 지급하여야 한다.
- 2) 제38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를 위반할 경우 위반 1일당 10만 원(부가세 없음)을 지연손해금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3) 가맹점사업자가 무단 폐점, 무단 영업표지 변경, 가맹본부로부터 양수도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포를 양도한 경우 1,000만 원(부가세 없음)을 위약 별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이 중도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해지될 경우 다음과 같은 위약금 이 발생됩니다.

해지일	위약금(부가세 없음)
계약체결 후 가맹점 오픈 전	구 자 이 1,000만 원
가맹점 오픈 후 계약기간 만료R전R해지MEDIA	TION A(1,000만 원/잔여 개월 수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1일 내외	22,600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38(3일)	-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1~35(6일)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실비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3일)	_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국공정거래조정	D-30(1일)	-
가맹금 예치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 - 농협은행 가맹금 예치	NCY D-29(1일)	11,000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8~25(3일)	실비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99m² 기준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45,000)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30~4(30일)	5,500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 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가맹본부 부담	가맹본부 부담	ə) ㄱ.ɔ) =)	비용부담	ul –
사유	비용항목	비용비율	지급절차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 어 등의 노후 화가 객관적	○간판교체 비 용 ○인테리어 공 사비용(장비·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	(공사계약서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 본부의 책임	
학가 객관적되는 인정되는 경우 이 시절을 이 사업을 어렵지 전에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	는 점포환경 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등 공사비용 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 (부) → 90일 이내에 가맹	본부의 사유종료 (계약의 해 지 포 영업 이 의 또 경우 부 안 비례 이 의 도 경우 보다에 하는 지 하지 하는 지 하는 이 마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를 통하여 점 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 이 끝난 날부		

			터 90일 이내 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 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 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 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		
			부) → 3차에 걸쳐 가맹본 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 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		
		FAI	액의 30%, 2 차 : 1차 지 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KOREA	FAIR TRADE MEDIA	2차 지급일로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 어 등의 노후 화가 객관적 으로 인정되 는 경우 ○위생이나 안 전의 결함으 로 인하여 가	○인테리어 공 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 한 실내건축 공사에 소요 되는 일체의	의 투자금액 (임차료 등), 월평균 매출 액 등을 고려 하여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모 한하역 가 맹사업의 통 일성을 유지 하기 어렵거 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 한 지장을 주 는 경우	맹사업의 통 일성과 무관 하게 가맹점 사업자가 추	점포환경개선 : 50%~10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50	**	"	
	용은 제외) ㅇ집기·장비교 체비용	-단, 집기·장비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맹점에 방 문 → 경영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개선사항 파악 →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 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 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본부 (1660-4241)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이용한런,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 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 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 명, 소요비용 안내 → 경 영지도 →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 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 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가맹본부 (1660-4241)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안자고한우곱창]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신용명 또는 내용	신용제공자	금액	신용 형태	신용제공 조건
주류대출	가맹점사업자 (지역에 따라 상이)	최대 30,000	최대 20개월 분할 상환	주류업체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은 조건

구체적인 신용제공 조건은 귀하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 지원을 원하는 경우 당사 및 주류공급업체로 상담하기 바랍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 용	비고
매출부진	가맹점 운영시 조기 안정화를 위한 메뉴, 서비스 등 향상을 위 한 경영지원	요청시 (협의)	가맹계약 기간	본사 가맹사업팀 진단 및 개선 방안 제시	
경영지원	조세, 노무, 종업원 교육 등 경영지원	요청시 (협의)	가맹계약 기간	본사 가맹사업팀 상담 및 경영 지원	



W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안자고한우곱창]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음식 가공 POS 사용, 입금 방법 등 개점전 필요한 제반 교육	실습교육 (지정교육장)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7일 교육	필수 교육
정기 및 부정기 보수 교육	신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운영방침 및 서비스기법	집체교육 및 개별교육	가맹점주와 협의하여 사전 통지	필요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안자고한우곱창]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사전교육 ^{KOREA} FAIR TI 개점 교육 : 3일	RADE MEDIATION AGENCY 5,500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정기/비정기 교육 : 2일	실비	필요시(협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는 당사가 제공하는 교육을 개점 전 이수하여야 하며, 정도에 따라 개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더불어 신메뉴 판매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광주	_	_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 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해당 없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0	_

※당사의 대표자가 진우한우곱창 풍암점이라는 상호로 동종 영업하고 있으므로 진우한우곱창 풍암점의 2021~2022년 부가가치세과세증명[별지 1]의 연간 평균 매출액을 참고 바랍니다.

[별지 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ㆍ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지2. 제1호 서식]

가 맹 금 예 치 신 청 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ㆍ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지3. 제2호 서식]

가맹희망자 인근의 가맹점사업자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ㆍ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지4. 제3호 서식]

节上工工天! 74月11 天天! 오!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 확인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지5. 제4호 서식]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 확인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지6]

직영점 운영 관련 증빙 서식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ㆍ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지7]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